

1. 개정이유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 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을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 등 신고(안 제52조의2 신설 등)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관련 신고서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규정

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안 제52조의3 신설 등)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일시적 부재 시 작성하는 대리자 지정서 서식을 규정

다.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안 제54조제1항)

-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사용자 중 시설검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년, 그 외의 경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검사주기를 이원화

라. 핵연료물질사용허가 신청서류 기재사항 등(안 제49조)

-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가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적도록 함

마. 핵연료물질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첨부 서류 및 대상 등 보완(안 제50조 및 제51조)

- 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 변경 전후 비교표 외 변경에 관한 서류, 공사 기간 중 장애방어 조치 등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안전관리규정을 추가

바. 판독 성능검사 요건 고도화(안 별표 3)

- 기술변화를 반영한 최신 해외기준(ANSI/HPS N13.11-2022)을 적용하여 판독 성능검사 기준 등을 고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규정에는”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핵연료물질의 종류·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6. 핵연료물질 취급방법 및 안전관리계획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8. 임계 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9.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10.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1.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처분계획
12. 종합 결론
13.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4. 참고문헌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핵연료물질의 취득·소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사항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보건
상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49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핵연료물질의 분실·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제49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하였을”을 “했
을”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1. 영 제72조제1호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2조제2호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⑤ 영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
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교표”를 “비교표 및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제5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3.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2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4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 취급업무 종사 경력 및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핵연료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리자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중 “정기검사”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로, “매년 1회”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1.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1회

2. 제1호 외의 경우: 매 3년마다 1회

제55조 중 “제13조, 제14조”를 “제13조”로, “제38조”를 “제44조”로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을 “신규과정과 정기과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방사선안전 관리규정”을 “안전관리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방사선장비”를 “방사선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 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를 “안전관리자와 안전 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을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6호다목의 보고기한란 중 “건강진단 결과를 받은”을 “건강진단을 실시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마. 보고사항란 마목 중 “방사선안전 관리자”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1호 중 “비교표 각 3부(같은 내용이 수록된 전자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2부)”를 “비교표 및 변경에 관한 서류 각 1부”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서식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 그 공사기간 중 방사선 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은 서류 1부

별지 제6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판독성능검사의 범주 및 합격기준 (제114조제1항 관련)

성능검사 범주	기준조사 범위	성능합격기준	
		H _p (10)	H _p (0.07)
		<i>L</i>	<i>L</i>
1. 고선량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광자 ¹⁾ 가. M150 나. ¹³⁷ Cs의 γ선	0.05~5 Sv	0.24	-
2. 광자, 광자-광자 혼합 방사선장 가. 고에너지 광자 ¹³⁷ Cs의 γ선 나. 저에너지 광자 X-선 다. ¹³⁷ Cs의 γ선/X-선(광자혼합) ²⁾ 1) 평균에너지 70 keV 이하: 0° 기준조사 2) 평균에너지 70 keV 초과: 0°, ±40°, ±60°중 선택하여 기준조사 ³⁾	0.5~50 mSv	0.3	0.3
3. 베타 방사선장 가. ⁹⁰ Sr/ ⁹⁰ Y 나. ⁸⁵ Kr	2.5~250 mSv	-	0.3
4. 베타-광자 혼합 방사선장 가. 제3호 및 제2호 가목의 혼합 나. 제3호 및 제2호 나목의 혼합	0.5~300 mSv	0.3	0.3
5. 중성자-광자 혼합 방사선장 가. D ₂ O 감속 ²⁵² Cf 중성자 ⁴⁾ 및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합 나. ²⁵² Cf 중성자 및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혼합	1.5~50 mSv	0.3	-

주)

1. X-선과 ¹³⁷Cs의 특성 및 선량환산인자는 부표와 같음
2. 평균에너지 20 keV 이상인 두 가지 종류의 광자를 혼합한 방사선장
3. 개인선량계는 지표면에 대해 수평 또는 수직을 이루는 상태에서 방사선원의 중심선과 개인선량계의 수직선 사이의 각도를 달리하여 기준조사
4. 두께 0.051cm Cd에 둘러싸인 반경 15cm 구형의 D₂O에 의하여 감속된 ²⁵²Cf 핵분열 중성자

[부표 1]

광자 방사선장의 특성¹⁾[제2,4,5 성능검사 범주 관련]

ISO 선원 코드	부가필터(mm) ²⁾				반가층(HVL) ³⁾ (mm)		균질계수 ³⁾ (1st HVL/ 2nd HVL)		평균 에너지 (keV)
	Al	Cu	Sn	Pb	Al	Cu	Al	Cu	
HK30	0.52				0.38	0.013	63	72	20
HK60	3.2				2.42	0.079	74	72	37
WS60		0.3				0.18		86	45
WS80		0.5				0.35		80	57
HK100	3.9	0.15			6.56	0.3	81	64	57
WS110		2				0.96		86	79
HK200		1.15			14.7	1.7	95	71	102
WS150			1			1.86		89	104
WS200			2			3.08		93	137
HK250		1.6			16.6	2.47	96	75	122
HK280		3			18.6	3.37	98	84	146
HK300		2.5			18.7	3.4	97	82	147
WS250			4			4.22		96	173
WS300			6.5			5.2		97	208
²⁴¹ Am									59

주)

1. 성능검사 제2,4,5 범주의 X-선에 해당하는 ISO 광자 방사선장의 특성값으로 ANSI N13.11-2022에 제시된 값에 따른다.
2. HK30 X-선은 1 mm Be, 그 외의 X-선은 4 mm Al의 내장필터를 포함한다.
3. 다른 종류의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가층은 5% 이내, 균질계수는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광자 방사선장의 선량환산인자¹⁾(제2,4,5 성능검사 범주 관련)

ISO 선원 코드	선량환산인자 ²⁾					
	심부선량 환산인자($C_{k,d}$)			표층선량 환산인자($C_{k,s}$)		
	0°	40°	60°	0°	40°	60°
HK30	0.39	0.32	0.20	1.01	1.00	0.99
HK60	1.19	1.07	0.86	1.29	1.27	1.22
WS60	1.55	1.42	1.18	1.49	1.44	1.37
WS80	1.77	1.65	1.39	1.64	1.58	1.50
HK100	1.68	1.56	1.31	1.58	1.53	1.46
WS110	1.87	1.76	1.52	1.71	1.67	1.59
HK200	1.75	1.66	1.46	1.62	1.59	1.54
WS150	1.77	1.68	1.49	1.64	1.61	1.56
WS200	1.65	1.57	1.42	1.55	1.53	1.50
HK250	1.67	1.59	1.43	1.56	1.55	1.51
HK280	1.60	1.54	1.39	1.51	1.51	1.48
HK300	1.59	1.53	1.39	1.51	1.50	1.48
WS250	1.54	1.49	1.36	1.47	1.47	1.45
WS300	1.47	1.44	1.33	1.42	1.43	1.43
²⁴¹ Am	1.89	1.77	1.50	1.72	1.66	1.57

주)

- 성능검사 제2,4,5 범주의 X-선에 해당하는 ISO 광자 방사선장의 선량환산인자이며, ANSI N13.11-2022에 제시된 값에 따른다.
- 선량환산인자($C_{k,d}$, $C_{k,s}$)의 단위는 Sv/Gy이며, $H_p(10)=C_{k,d} \times K_a$, $H_p(0.07)=C_{k,s} \times K_a$ 이다(K_a 는 공기커마).

[부표 3]

광자 방사선장의 특성¹⁾[제1,2,4,5 성능검사 범주 관련]

성능검사 범주				NIST 선원 코드	부가필터(mm) ²⁾				반가층(HVL) ³⁾ (mm)		균질계수 ³⁾ (1st HVL/ 2nd HVL)		평균 에너지 (keV)
1	2	4	5		Al	Cu	Sn	Pb	Al	Cu	Al	Cu	
○	○	○	○	M30	0.5				0.36		65		20
	○	○	○	L40	0.53				0.5		59		23
	○	○	○	M40	0.89				0.73		69		25
	○	○	○	L50	0.71				0.76		60		28
	○	○	○	M50	1.07				1.02		66		29
	○	○	○	M60	1.56				1.68		66		35
	○	○	○	L80	1.45				1.83		57		40
	○	○	○	L100	1.98				2.77		57		48
	○	○	○	M100	5				5.02		73		53
	○	○	○	M150	5	0.25			10.2	0.67	87	62	73
	○	○	○	H150	4	4	1.51		17	2.5	100	95	118
	○	○	○	M250	5	3.2			18.5	3.2	98	86	139
	○	○	○	H200	4	0.6	4.16	0.77	19.8	4.1	100	99	162
	○	○	○	H250	4	0.6	1.04	2.72	22	5.2	100	98	204
○	○	○	○	H300	4.1		3	5	23	6.2	99	98	251
	○	○	○	¹³⁷ Cs						10.8			662
	○			⁶⁰ Co						14.9			1250

주)

1. NIST 광자 방사선장의 특성값이며, ANSI N13.11-2022에 제시된 값에 따른다.
2. M30, L40, M40, L50, M50, L80, L100 X-선은 1 mm Be, 그 외의 X-선은 3 mm Be의 내장필터를 포함한다.
3. 균질계수는 첫 번째 반가층을 두 번째 반가층으로 나눈 값이며, 다른 종류의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가층은 5% 이내, 균질계수는 10%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표 4]

광자 방사선장의 선량환산인자¹⁾(제1,2,4,5 성능검사 범주 관련)

성능검사 범주				NIST 선원 코드	선량환산인자 ²⁾					
1	2	4	5		심부선량 환산인자($C_{k,d}$)			표층선량 환산인자($C_{k,s}$)		
					0°	40°	60°	0°	40°	60°
○	○	○	○	M30	0.42	0.34	0.22	1.02	1.01	0.99
	○	○	○	L40	0.50	0.41	0.28	1.04	1.03	1.01
	○	○	○	M40	0.63	0.53	0.37	1.07	1.06	1.03
	○	○	○	L50	0.70	0.60	0.43	1.10	1.09	1.05
	○	○	○	M50	0.79	0.69	0.51	1.13	1.11	1.08
	○	○	○	M60	1.00	0.89	0.68	1.21	1.19	1.14
	○	○	○	L80	1.09	0.97	0.76	1.26	1.23	1.18
	○	○	○	L100	1.23	1.11	0.89	1.34	1.31	1.25
	○	○	○	M100	1.52	1.39	1.14	1.49	1.45	1.37
	○	○	○	M150	1.78	1.65	1.40	1.64	1.60	1.50
	○	○	○	H150	1.71	1.61	1.40	1.60	1.57	1.48
	○	○	○	M250	1.62	1.54	1.36	1.53	1.51	1.44
	○	○	○	H200	1.57	1.50	1.33	1.49	1.47	1.42
	○	○	○	H250	1.48	1.42	1.29	1.42	1.42	1.38
	○	○	○	H300	1.42	1.38	1.26	1.37	1.38	1.35
○	○	○	○	¹³⁷ Cs	1.21	1.20	1.16	1.21	1.23	1.24
	○			⁶⁰ Co	1.17	1.16	1.14	1.18	1.18	1.19

주)

1. NIST 광자 방사선장의 선량환산인자이며, ANSI N13.11-2022에 제시된 값에 따른다.
2. 선량환산인자($C_{k,d}$, $C_{k,s}$)의 단위는 Sv/Gy이며, $H_p(10)=C_{k,d} \times K_a$, $H_p(0.07)=C_{k,s} \times K_a$ 이다(K_a 는 공기커마).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교육의 과정 및 시간(제138조제6항 관련)

구분	교육과정	신규과정 시간		정기과정 시간	
		기본교육	직장교육	기본교육	직장교육
신고사용자	신고분야	3시간 이상	-	매년 3시간 이상	-
허가사용자	일반분야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매년 3시간 이상
	방사선투과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매년	매년
	검사분야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해당연도 직장교육 정기과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의 33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한정한다)을 작업 종사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직장교육 신규과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핵연료물질사용등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본사	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명칭	
		주소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목적 및 방법

핵연료물질의 종류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장소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기간 및 연간(예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간)사용 또는 소지의 예정량

사용후핵연료물질의 처리 또는 처분의 방법

사용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저장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저장능력

폐기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1부 2. 안전관리규정 1부 3.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보상기준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 작성·발급

→

허가증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허가증번호		허가일자					
선임	직위	성명	선임일자	면허증		교육	
				종류	번호	과정명	수료일자
변경 · 해임	기존 신고사항			변경·해임 신고사항		사유	
	직위	성명	선임일자	변경·해임일자			
	면허증			변경내용(변경신고에 한정함)			
	종류	번호					

「원자력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3조의3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제2항 또는 제82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인력의 경우에는 업무대행 계약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핵연료물질사용자 및 허가사용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보수교육이수 증명서류 포함)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자격 등록증 포함) 사본 1부	
	3. 신고사용자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확인서류 및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증명서류 각 1부	
	4. 안전관리자 업무분장 내용(2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5.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절차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

핵연료물질 사용자 또는 방사성동위 원소등사용 자	상호					
	주소					
	사업소(작업장)명					
	사업(작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지정내용	[]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핵연료물질사용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 허가사용자		[] 신고사용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면허 또는 자격사항	취급경력	교육이력
	안전관리자					
	대리자					
	대리기간					
	대리사유					

「원자력안전법」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또는 제68조의5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핵연료물질사용자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u>사용시설 · 분배시설 · 저장시설 · 보관시설 · 처리시설 및 배출시설(이하 “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u> 2. <u>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u> 3. <u>재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기의 운전</u> <u>에 관한 사항</u> 4. <u>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및 같은 구역에의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과 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 등에 관한 사항</u> 5. <u>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u> 6. <u>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의 방법에 관한 사항</u>	제49조(핵연료물질사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 . 다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u>시설 개요</u> 2. <u>시설주변의 환경</u> 3. <u>운영계획 개요</u> 4. <u>핵연료물질의 종류 · 특성 · 위치 및 제원</u> 5. <u>안전시설 개요</u> 6. <u>핵연료물질 취급방법 및 안전관리계획</u>

7. 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
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
항

8. 핵연료물질의 반출·반입·
운반·저장 및 그 밖의 취급
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배출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0. 비상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사용시설등과 관계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7. 예상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8. 임계 안전성의 평가에 관한
절차·방법 및 결과

9.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
향

10.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11.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
리·처분계획

12. 종합 결론

13.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14. 참고문헌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리규정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
만, 허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사
항은 적지 않을 수 있다.

1.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
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취급
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2. 핵연료물질의 취득·소지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

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
배 · 보관 · 운반 · 처리 · 배출
· 저장 · 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 · 피폭방사선량
및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
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따른 오염사항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
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 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
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
입자의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
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 여부를 발
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필
요한 보건상 조치에 관한 사
항

10. 법 제49조에 따른 기록과 그
비치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핵연료물질취급자 등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
2.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 인한 방사선의 차폐에 관한 설명서
3. 핵연료물질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처리·저장 및 배출시설에 관한 설명서
4. 방사선환경영향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정도 및 원인과 사고에 따른 재해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

11. 위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2. 핵연료물질의 분실·도난 등 사고 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13.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④ -----

-----.

1. 영 제72조제1호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72조제2호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3. 영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삭 제>

<삭 제>

가. 운전중의 과실

나. 기계·장치의 고장

다. 지진·화재등 재해

6. 장비 및 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신 설>

④ 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신 설>

<삭 제>

⑤ 영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
----- 했을 -----
----- 발급해야 -----.

제50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첨부해야 -----.

1. ----- 비교표 및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2. 공사를 수반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 중 방사전장해방어를 위한 조치를 적

2. (생략)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변경과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3. · 4. (생략)

<신설>

<신설>

②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은 서류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5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

-----.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 4. (현행과 같음)

5.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사유가 분명한 사항

② -----

제출해야 ----.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변경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신 설>

<신 설>

제52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영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선임·변경 및 해임신고는 별지 제65호의3서식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변경·해임 신고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면허증 사본(보수교육 이수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사본(「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른 자격 등록증을 포함한다)

3.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분장 내용 1부

4.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52조의3(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및 자격요건)
① 영 제70조의4제1항에 따른

제54조(정기검사) ① 영 제7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사용개시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
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준용규정) 핵연료물질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대리
자 지정서는 별지 제65호의4서
식에 따른다.

② 영 제70조의4제3항제3호에
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
물질 취급업무 종사 경력 및 교
육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핵연료물질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리자 지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
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이하 “안전
관리자”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4조(정기검사) ① -----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검사-----
다음 각 호에 따라 -----
--.

1.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매년 1회

2. 제1호 외의 경우: 매 3년마다
1회

② -----

----- 제출해야 --
---.

제55조(준용규정) -----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2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영 제148조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방사선안전 지식수준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직장교육

가. 이용업체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나. 이용업체의 방사선원 및 방사선장비의 특성

다. (생략)

② 영 제1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생략)

⑤ 영 제148조제4항에 따른 직장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제13조

제44조

제138조(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교육) ① 신규과정과 정기과정은

1. (현행과 같음)

2.

가. 안전관리규정

나. 방사선기기

다. (현행과 같음)

②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이외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실시해야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48조제7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⑥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